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2. 6. 22 선고 2022가단3705 판결 [구상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B

피 고 주식회사 C

변 론 종 결 2022. 6. 8.

판 결 선 고 2022. 6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6,477,150원 및 그 중 30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9. 27.부터, 25,600,000원에 대하여는 2021. 10. 15.부터 각 2022. 5. 5.까지는 연 9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임재훈

별지